

학술지편집위원회규정

학술지편집위원회 통과일자 1993. 10. 1.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“영남의대 학술지(THE YEUNG NAM UNIVERSITY MEDICAL JOURNAL)”의 발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명칭) 위원회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 3조(제호)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제호는 국문 “영남의대 학술지”와 영문 “THE YEUNG NAM UNIVERSITY MEDICAL JOURNAL (약호: YEUNG NAM UNIV. MED. J.)”로 한다.

제 4조(구성)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
1. 위원장: 1 명
2. 위 원: 약간명
3. 간 사: 1 명

제 5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학장이 지정한 위원이 대행한다.

제 6조(간사) 간사는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4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소집일 1일전에 서면으로 통보 소집한다.

제 8조(임명 및 임기) 제 4조에 명시된 위원은 학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.

제 9조(원고의 종류)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게재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단 종설은 위원회에서 위촉한 원고로 한다.

1. 종 설
2. 원 저
3. 증례보고

제10조(투고) ① 투고 자격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원, 대학원 학생 및 본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.

②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한 같은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으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 학술지에 전재할 수 없다.

제11조(원고 모집 공고)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는 발행일 105일 전에 게시
공고하며 모집기간은 45일로 한다.

제12조(게재 및 편집) 원고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
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를 편집방침에
따라 수정할 수 있다.

제13조(원고작성 방법) 원고는 학술지 투고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
다.

제14조(학술지 발간) 본 학술지는 년2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5조(게재료)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이 정하는 소
정의 게재료를 징수한다.

제16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.

제1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(1993. 10. 1)

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(개정) 이 규정은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